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압수물건의 인계 대상을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는 등 검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인데, 압수물건과 보관증은 보관 형태만 다를 뿐 범칙사건 고발에 따른 인계 절차라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압수물건 인계 대상 뿐 아니라 보관증의 인계 대상도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5조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사법경찰관----------.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226

발의연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이해식・이상식・이광희
서영석・박정현・김영배
양부남・김영진・박상혁
한민수・김한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개정안은 압수물건의 인계 대상을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는 등 검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인데, 압수물건과 보관증은 보관 형태만 다를 뿐 범칙사건 고발에 따른 인계 절차라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압수물건 인계 대상 뿐 아니라 보관증의 인계 대상도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함.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 중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를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생 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지방공소청장----------. 1.·2. (현행과 같음)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

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 ②----------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